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장경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838

발의연월일: 2024. 9. 10.

발 의 자: 장경태・이기헌・황정아

민병덕・박 정・이해식

김승원 • 부승찬 • 김용민

이성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양육비 지급 의무는 단순 채무와 달리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 기준 양육비 이행률은 4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도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경제적·심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상당히 많음.

이에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최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에게 운전면허정지, 출국 금지 등의 처분과 더불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제재를 강화하였으나, 이조차 법정 절차를 따라야 함으로써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 이로 인해 양육을 홀로 책임지는 부 또는 모에게 큰 부담이 되어 동 제재를 활용하기 쉽지 않은 실정임.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업'을 시행하 고 있지만 지원대상이 한정적이고 지원기간도 최대 1년을 넘을 수 없어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양육비 채무자가 2회 이상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로 부터 대지급 금액을 추후 징수하도록 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 입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비용이 적시에 지급 되도록 국가가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가 양 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국가가 부 또는 모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미성년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비양육부·모는 양육부·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하여진 양육비를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하고, 비양육부·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비양육부·모의 부모가 지급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양육비 대지급 신청은 미성년

자녀가 「민법」상 성년에 이를 때까지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제1항 및 제2항).

- 라. 양육비 대지급의 지원기준은 양육비대지급결정위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 마.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양육비 대지급 지원기준, 양육비 대지급 여부 및 양육비 대지급 금액의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양육비대지급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 바.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대지급의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이행관리원의 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 사. 양육비 대지급 후 양육비 채무자가 대지급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 하는 경우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안 제9조).
- 아.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면 그 즉시 양육비 대지급을 중지하되 양육비 채무자가 다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중지된 양육비 대지급의 재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대지급을 받거나 양육비 대지급 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지급된 양육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함(안 제11조).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국가가 부 또는 모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미성년 자녀가 경제적 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양육비"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이하 "미성 년 자녀"라 한다)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 2. "양육비 채무"란 「민법」 제836조의2 및 「가사소송법」상의 집 행권원이 있는 양육비용 부담에 관한 채무를 말한다.
- 3. "양육부·모"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 4. "비양육부·모"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 5. "양육비 채권자"란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이거나 법정대리 인 등 실질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양육 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 6. "양육비 채무자"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람(비양육부·모의부모가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양육부·모의 부모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양육비 지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양육비의 지급 의무) 비양육부·모는 양육부·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하여진 양육비를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비양육부·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 우에는 그 비양육부·모의 부모가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양육비 대지급 신청) ①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이하 "양육비 대지급"이라 한다)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양육비 대지급 신청은 미성년 자녀가 「민법」상 성년에 이를 때까지 할 수 있다.
 - ③ 양육비 대지급 신청의 대상, 금액, 지급시기 등 지원기준은 제6 조에 따른 양육비대지급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이 경우 양육비 대지급 금액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 제6조(양육비대지급결정위원회) 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양육비대지급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양육비 대지급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 2. 양육비 대지급 여부 및 양육비 대지급 금액의 산정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위원장이나 위원의 5분의 1에 의하여 위원회에 부의된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이행관리원의 장이 된다.
 -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양육비 대지급 결정 및 통지)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대지급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양육비 대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양육비 대지급 결정의 요지, 양육비 대지급 금액 및 지급 시기 등을 포함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정 및 통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여

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8조(양육비 대지급 실시 및 이의신청)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7조에 따라 결정·통지된 양육비 대지급 금액을 양육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양육비 대지급 결정·통지를 받은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 대지급 실시와 동시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종료하여야 한다.
 - ③ 제7조에 따른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이행관리원의 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는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양육비 채권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제9조(양육비 대지급 금액의 징수)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대지급을 한 경우에는 양육비 대지급 금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한다.
 - ② 양육비 채무자가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

- 우 이행관리원의 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강제징수 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10조(양육비 대지급의 중지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즉시 양육비 대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 ②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양육비 대지급과 관련된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이 를 지체 없이 이행관리워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중지된 양육비 대지급의 재개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알려야 하는 내용과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양육비 대지급 재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대지급된 양육비 등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지급된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양육비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하는 액수를 감경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대지급을 받은 경우
 - 2. 제10조제2항에 따른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대지급된 양육비의 반환은 양육비 채권자에게 통

- 지하여 징수하고, 양육비 채권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여성 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육비의 반환 기간,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권리의 보호) ① 양육비 대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 ② 양육비로 지급받은 양육비 대지급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 제13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대지급을 받은 사람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대지급을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4조(과태료)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 족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양육비 대지급